

P.5

-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입물과 과정이라는 두 가지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산출물의 생산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. (○)
- 매도자가 그 사업을 사업으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취득자가 그 집합을 사업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 집합이 사업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 (○)

P.11

- 일반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이다. 그러나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. (○)
-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될 수 있다. (×)

풀이 의무가 아닌 원가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일의 부채가 될 수 없다.

P.34

- 가장 단순한 경우,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. (○)

P.36

-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결권 보유자와의 계약상 약정이나 그 밖의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힘을 가질 수 있다. (○)
-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 및 다른 당사자의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. 단, 잠재적 의결권은 권리가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한다. (○)

P.150

-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. (○)
-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. (○)
- 지분법손익을 인식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한다. (○)

P.176

- 외화는 표시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. (×)

풀이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.

-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한다. (×)

풀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.

- 표시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법을 적용한다. (×)

풀이 표시통화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된다.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변경 후의 표시통화로 재작성하여야 한다. 즉 소급법을 적용한다.

-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다. (×)

풀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.

P.206

-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외화위험을 제외하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. (○)
-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. (×)
- 풀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. 왜냐하면 지분법은 피투자기업의 손익 중 투자기업의 몫을 투자기업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
-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,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. (○)
-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결합위험인 통합익스포지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. (○)
- 개별항목의 변동이 집합 전체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순포지션을 구성하는 항목의 집합도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. (○)

P.207

- FVPL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신용위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, 이러한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. (○)
- FVOCI 항목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한 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. (○)
-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, FVPL 측정 비파생금융자산(부채)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. (○)
-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. (○)
- 자기지분상품은 해당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. (○)
- 기업이 위험회피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(○)
- 기업이 모든 위험회피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 (○)